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자치 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구축된 공간임.
- 단순 판매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제품의 사회적 가치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으로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관의 운영을 통해 관내 당사자 조직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2) 위탁사무 내용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의 운영
 - 홍보판매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 홍보판매장 이용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 사회적경제 제품의 입점 심사, 재고 관리 및 매장 관리
- 제품 판매, 결제 시스템(POS) 관리 및 수익금 정산
- 입점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 연계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기타 시장이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3)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소 재 지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38, 정약용도서관 1층	
조 성 일	2025. 10. 1.	
시 설 규 모	○ 약52m ² ○ 주요시설 : 매대 등	
사 업 내 용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위 치 도 & 현 장 사 진		

4)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이내 위탁 가능
 - 다만, 최초 민간위탁 건으로 향후 관리운영 상황에 따라 재계약 및 계약 취소 등 행정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3년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 (1회 갱신 가능)

5) 수탁기관 선정방식

○ 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리위탁의 경우 입찰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자격 제한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한경쟁 :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대상은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간지원 조직 등으로 제한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활용
 - 본 관리위탁은 별도의 위탁료나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고 운영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인 가격중심의 낙찰 방식(최저가 등) 적용이 부적합
 -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특수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의 우수성, 당사자 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능력,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가장 적정함.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위탁사업비: 없음

- 원가분석 결과, 시설 운영을 통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탁료 0원으로 책정
- 홍보판매장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자체 수입(판매 수수료 등)으로 운영

인력의 인건비 및 직접 운영비를 우선 지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

- 운영비 충당 후 잔여 수익금이 발생할 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거나 위탁시설 개선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확립
- 별도의 위탁사업비 지원 없이 자체 사업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일부 경비는 지원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일자리지원과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해 온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행정 직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유통·마케팅 역량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홍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안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제한경쟁입찰 시 지역 네트워크가 부재하거나, 관외 업체가 선정될 경우 ‘관내 기업의 판로 지원과 소통’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지나치게 상업적인 유통·마케팅만을 강조할 경우 관내 사회적 기업의 홍보 및 공공 굿즈 판매처라는 공익적 조성 의도와 상충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과정에서 시설의 설치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및 사후 감사 체계를 통한 평가 기준과 운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남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

○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기업 현황 (2026. 3. 1. 기준)

(단위: 개소)

총계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250	47	4	79	2	118

참고자료 2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설치 예산

○ 2025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자료

주요부서	민자리정원학과 사회적경제팀
사업분류	공학
업무담당	공공기획팀(23660) 팀장 조경진(178905)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76페이지)

정책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비조율(%)	1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사업장 :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조성
- 예산확보 실적 및 2025년도 당초예산

○ 총사업비 : 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4년 이월(회계)	2025년 당초	향후투자	비고
계	150,000	100,000	50,000	0	
국비	0				
도비	30,000	30,000			
시비	120,000	70,000	50,000		
기타	0				

* 2024년 이월 : 2024년 1회수경 100,000천원

□ 사업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오프라인 홍보 확대를 위한 심설 홍보·판매장 필요
- 시 공공캐릭터 굿즈 개발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매처 조성

□ 사업비 산출내역

- 인테리어 공사 : m²당 770천원 x 52m² = 40,000천원
- 매대, 전사대 등 집기비품 : 10,000천원

□ 그동안의 추진사항

- 2020. 4. : 장의용 도서관 개관 및 스토어한편 운영 (약 52m²)
- 2020. 5. ~ 2022. 1. :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 중단
- 2022. 1. ~ 2024. 12. : 스토어한편 운영 (교육·체험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팝업스토어)
- 2024. 5. : 공공캐릭터 굿즈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 2024. 8.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캐릭터 굿즈 개발 워크숍 추진
- 2024. 11.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캐릭터 굿즈 시제품 제작

□ 향후 추진계획

- 2025. 1. ~ 6. : 공간 벤치마킹 및 설계
- 2025. 5. ~ 6. : 인테리어 공사 추진
- 2025. 7. ~ 12. : 사회적경제 홍보판매장 조성 완료 및 운영

□ 사전절차 이행사항

비밀번호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 12조	중기지방재정경제위원회	반영
투자심사결과	비대응	예산결산기준 준수	준수
유연성확인결과	대응	공공재정관리계획 등 기타	항상준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남양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신청서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남양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